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임연진

전화 055-640-4314

보도자료

2024. 10. 11.(금)

제목 16년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2008. 10.경 경남 거제시 소재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상 바닥에 암매장한 피고인을 오늘(10. 11.) 살인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검·경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직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DNA 분석, 각종 영장청구, 법리검토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피고인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16년 동안 암장되어 있던 살인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시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 필로폰에 취해있었던 점, 나아가 범행 당시로부터 16년이 경과하여 관련 증거가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하였음
 - 필로폰이 체외로 배출된 후 3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 사실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여 이를 모두 영상녹화하고,
 -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여 자백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피고인의 인격적 성향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함
- 검찰은 16년전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외롭게 암매장되어 있었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인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I

사건 개요

1. 사건 관계인

- 피고인 A○○ (남, 58세, 범행 당시 42세, 무직)
- 피해자 B○○ (여, 범행 당시 33세)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08. 10.경 거제시 소재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 **[살인]**
 ※ 피해자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위 옥탑방 뒤편 바닥에 놓아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건물 구조물인 것처럼 암매장한 사체유기죄는 '15. 10.경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
- 피고인은 '24. 8. 30.경 경북 양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0.5g을 구입한 다음 '24. 9. 18.경까지 3차례 필로폰을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II

주요 경과

- '11. 8. 8. 피해자 모친, 실종신고
- '11. 8. 29. 경찰, 피고인 조사(헤어진 후 연락되지 않는다고 진술)
- '11. 11. 9. 경찰, 본건 옥탑방 탐문(특이사항 미발견)
- '11. 12. 22. 경찰, 장기미제 등록
- '24. 8. 30. 옥상 방수공사 중 피해자 사체 발견
- '24. 9. 2. 국과수, 사체 부검(사인: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
- '24. 9. 3. 검찰, 캐리어 등에 대한 DNA 분석(피고인 DNA 미발견)
- '24. 9. 9. 검찰, 체포영장 및 실시간 통신영장 등 청구
- '24. 9. 19. 피고인 체포 → 구속(9. 21.)
- '24. 9. 27.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 ~ 10. 10. 분석, 영상녹화조사 등)
- '24. 10. 11. 구속 기소

1. 암장되었던 살인 장기미제 사건을 검·경 협력을 통하여 신속히 해결함

- 경찰은 '11. 8.경 실종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들을 수 있었고 본 건 옥탑방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확인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등록함
- 검찰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사체와 함께 발견된 캐리어 등에 대한 대검찰청 DNA 분석을 추가실시하는 등 신속한 용의자 특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소재파악을 위한 영장청구, 공소시효 관련 법리검토 등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 등을 확인함으로써, 16년간 암장되어 있던 살인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음

2. 검찰 보완수사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함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마약 전력이 있고 체포 전날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검찰은 필로폰이 체외로 배출¹⁾된 후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범행 일시, 장소, 타격 도구, 부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그 자연스러운 진술과정을 시각적으로 현출하였음
 - 또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²⁾을 실시하여 자백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피고인의 인격적 성향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였음
-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16년 동안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껴 마약을 투약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할가분한 마음이 든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음

1) 필로폰은 통상 7일 ~ 10일 내에 체외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 검찰은 필로폰 투약 10일째에 조사를 개시하였음

2)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 여러 심리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여부, 심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과학수사기법임

-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강력 사건이 암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범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